

【붙임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신·구 대비표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행 (중소기업청 공고 2014-176호, 2014. 5. 7) 부 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(중소기업청 공고 2014-215호, 2014. 6. 12) 부 칙</p>
<p>1. 이 공고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60호(2014. 4. 25)는 이를 폐지한다.</p>	<p>1. 이 공고는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76호(2014. 5. 7)는 이를 폐지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</u></p>
<p>1. 총 칙</p> <p>라. 기타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른다. ○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27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76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. 	<p>1. 총 칙</p> <p>라. 기타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른다. ○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31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215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.